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7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 : 신동욱 · 김은혜 · 고동진

강승규・권성동・주호영

이종배 · 박상웅 · 강대식

백종헌 • 구자근 • 안상훈

김 건 · 박정하 · 신성범

유용원 · 이만희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음. 무제한 토론은 국회(의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합법적 수단을 통해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절차임.

그러나 다수당이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으로 활용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여 무제한 토론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제한 토론을 상기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하여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안건과 관계없는 다른 발언은 금지하도록 함. 또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의 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여 다수당의 독주 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달성하 고자 함(안 제 106조의2).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전단 중 "아니하는 토론"을 "아니하는 반대토론"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의원은 제1항에"를 "제1항에"로,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를 "반대하는 의원은 그 안건에 대하여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으며 안건과 관계없는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6조의2제6항 전단 중 "5분의 3"을 "3분의 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등) ①
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	
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u>아니하는 토론</u> (이	<u>아니하는 반대토론</u>
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	
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	
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	
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	③ <u>제1항에</u>
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u>대</u>	<u>반대하는</u>
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의원은 그 안건에 대하여 무제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한 토론을 할 수 있으며 안건과
토론할 수 있다.	관계없는 다른 발언을 하여서
	<u>는 아니 된다.</u>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6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1	대
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	7]
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
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
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u> 주</u>
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카
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 ⑩ (생 략)

<u>3</u>
분의 2
⑦ ~ ⑩ (현행과 같음)